



# 매입임대주택 미임대분 입주자모집

[입주자모집 공고일 2020. 3. 27.]

-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시 저소득 국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가 다세대·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.
- 본 모집공고는 장기미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, 기존 예비자 및 다른 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먼저 경우 접수기간 중 해당 주택이 계약불가 상태일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.

## 1. 모집안내



- 주택개방기간 : 2020년 4월 6일(월)~2020년 4월 11일(토) 10:00~16:00 전기/수도 사용 금지
  - 공급주택을 해당일자에 개방할 예정이오니,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방문하여 둘러보시기 바라며, **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  - ※ 주택개방 문의 : 031-378-1040 (주택관리공단)
- 입주신청기간 : 2020년 4월 13일(월)~4월24일(금) 10:00~16:00(12~13시 제외)
  - ※ 4월 15일(선거일) 및 주말(토·일요일) 신청 불가
- 신청방법 : 경기행복주택 광고홍보관(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-1) 방문 선착순 접수
  - 입주신청 당일 접수시간 종료 前 계약금 미입금시 약약서 작성불가 및 입주신청 취소됨
- 신청가능 주택 확인 : 신청일 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([www.gico.or.kr](http://www.gico.or.kr)) 확인 필수
  - 기존예비자의 계약체결에 따른 주택내역 변경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(신청개시일 전)
  - 신청기간동안 일별 접수마감 후 변경된 주택내역 홈페이지 게시 예정(18시 이후)
- 입주자 선정 절차 : 입주자격 심사 완료 후 본계약서 작성일 개별 안내
  - 자격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소명 불가 시 계약 취소, 계약금 20만원 전액 반환(이자지급 없음)**
  - 입주자격 심사 보완서류 미제출 혹은 계약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약 시 위약금 부과됩니다.**
  - 주택별 신청접수가 완료되거나 모집이 철회될 수 있으니, 접수가가능여부(일자별 마감 후 홈페이지 게시) 사전 확인 요망, 접수가 마감된 주택은 예비자(2배수)로 선착순 접수 진행
  -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도착으로 인정, 추첨으로 접수순번 결정**  
(9:30분 이전은 입장이 불가하니, 해당시간 이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)
  - 한명이 2인 이상을 대리하거나, 본인 및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2번 추첨 또는 접수 불가
  -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

## 2. 임대대상 주택

- 대상주택 : 경기도내 시·군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60호(주택소재지, 면적 등은 주택내역 참조)
  - ※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개방 시 반드시 확인 요망

## 3. 입주신청자격

-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,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인 분

##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?

다음 전원(이하 세대구성원)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(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)을 말한다.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)

세대구성원(자격검증대상)	비고
· 신청자	
· 신청자의 배우자	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
· 신청자의 직계존속	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
·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	
· 신청자의 직계비속	
·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	
·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	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
·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	

### ※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(세대구성원) 포함함

동일주소 외국인 배우자	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배우자 - 단,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,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해야 함
외국인 직계존·비속	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(또는 국내거소신고)을 한 사람으로서,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(거소)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
배우자의 전혼자녀	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거나,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야 함
태 아	세대구성원의 태아

※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형제·자매, 사위, 며느리, 장인, 장모, 시부모, 동거인 등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.

※ 「민법」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단,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(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).

-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
-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,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
-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(내국인)가 세대주인 경우

## ■ 소득기준

가구원수	월평균 소득 100%
1인 가구	2,645,147원 이하
2인 가구	4,379,809원 이하
3인 가구	5,626,897원 이하
4인 가구	6,226,342원 이하
5인 가구	6,938,354원 이하

※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(세대구성원) 전원을 말함

※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

※ 소득 산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(단, 세대원의 실종,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)

※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, 태아,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검증 대상이 됩니다.

※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월평균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\*(655,729원) 합산하여 산정  
(6인 가구) : 7,594,083원, (7인 가구) : 8,249,812원

\* 1인당 평균금액 = (5인가구 월평균소득 - 3인가구 월평균소득) / 2

## ■ 소득 산정방법

- 소득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,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.(소득액은 해당세대(세대구성원 전원)의 합계액임)

구분	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
소득	<p>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근로소득 (상시근로소득, 일용근로소득, 자활근로소득, 공공일자리소득)</li> <li>• 사업소득 (농업소득, 임업소득, 어업소득, 기타사업소득)</li> <li>• 재산소득 (임대소득, 이자소득, 연금소득)</li> <li>• 기타소득 (공적이전소득)</li> </ul>

## 4.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

구분	내용
임대조건	• 주택별 임대조건 : 「첨부」 주택내역 참조
임대기간	• 최초 임대차기간 : 2년, 9회까지 재계약가능 (최장 20년거주)

※ 해당 주택은 주택 관리업무(공용부위 청소, 공과금 배부 등) 외부 위탁이 시행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월 임대료 외에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.

-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서 전환보증금(백만원단위) 추가 납부시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
-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

## 5. 신청시 구비서류

-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,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시 **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**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■ 신청자 구비(제출)서류[본인확인서류] : 입주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

구분	구비서류
본인 직접 신청할 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본인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]</li> <li>② 본인 도장 [서명으로 대체 가능]</li> </ol>
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본인(신청자)과 배우자의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]</li> <li>② 본인(신청자) 도장</li> <li>③ 본인(신청자)과의 관계 입증서류 [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]</li> </ol>
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본인(신청자)과 대리인의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]</li> <li>② 본인(신청자) 도장</li> <li>③ 본인(신청자) 인감증명서 [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]</li> <li>④ 위임장 [본인(신청자)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으로 본인(신청자)가 자필 서명 할 것]</li> </ol> <p>* 수입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</p>

■ 공통 제출서류 : 입주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

구분	제출서류	비 고	발급처	부수
필수	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양식은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장소 비치</li> </ul>	신청자 작성	1통
	확약서			
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동의방법)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*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</li> <li>(주의)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·접수가 거부됨</li> </ul>		
	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든 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(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구성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원 사유,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)</li> <li>서류발급일과 입주신청일 사이 주소변경이나 세대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</li> <li>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*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'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'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'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'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</li> </ul>	행정복지 센터 (읍·면·동 사무소)	1통
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(예시 : 세대분리, 미혼, 이혼, 사별 등)</li> <li>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(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)</li> </ul>	행정복지 센터 (읍·면·동 사무소)	1통	
추가 (해당자에 한함)	(신청자의 배우자) 주민등록표등본	<p>&lt;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구성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</li> </ul>	주민센터	1통
	임신진단서 (또는 임신헌인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</li> </ul>	병원	1통
	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국내거소신고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</li> <li>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</li> </ul>	출입국 관리 사무소	1통

7. 유의사항(신청 전 필독)

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,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,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관련항목	유의사항
주택열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대주택의 현황(층, 향, 도배상태, 보일러 등)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,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</li> </ul>
임대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,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.</li> <li>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임대차계약을 갱신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(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)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.</li> </ul>

	입주자격 (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)	할증구간 (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)	할증비율(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)	
			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	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
	70%초과 100%이하	100%초과 105%이하	40%	80%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시적 소득,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<b>재계약 기준(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5%)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.(단, 기존계약조건의 80% 할증)</b></li> </ul>			
입주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<b>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.</b></li> <li>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”에 따릅니다.</li> </ul>			
계약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본계약 체결일정 및 입주관련 사항은 입주자격 심사결과에 따른 적격자에게 별도 안내</b>합니다.</li> <li><b>부적격자</b>는 계약해지(해제) 통보 없이 입주 적격자 발표 후 신청 계약료 계약금만을 반환(이자지급 없이 약10일 전후 지급)</li> <li><b>부적격자가 아닌 단순 번심등에 의한 계약 해지는 본 공고문 및 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</b></li> </ul>			
주소변경 통 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<b>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</b>하여야 합니다.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		
주택도시기금 상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(구 국민주택기금)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	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(공공분양, 공공임대아파트 등)에 신청가능하며,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<b>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</b>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만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.</li> <li>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(공용부분 청소, 공과금 배분 등)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<b>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부담요금을 부담</b>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,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, 고장 등에 따른 A/S 요청,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.</li> </ul>			

## 8. 접수장소 및 기타 문의처

구분	위 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수장소 : <b>경기행복주택 광고 홍보관</b> [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-1]</li> <li>접수기간 : '20.4.13.(월)~4.24.(금) ※ 4월15일 선거일, 주말 제외</li> <li>접수시간 : 10:00~16:00 (12:00~13:00 제외)</li> <li>찾아오시는 길</li> <li>① 지하철 : &lt;신분당선&gt;광고중앙(아주대)역 <b>4번출구</b>에서 약 350m</li> <li>② 버스 : 광고중앙.아주대역 환승센터 (지하1층) 하차 버스노선 : 일반버스 18,19,201,32-4, 5-3,670,81,88-1 광역버스 M5121, M5115, M5422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 지도출처 : 카카오맵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문의처</li> </ul>	<p>신청문의 : 경기도시공사 주택관리처 031-220-3548, 3218 접수처 찾아오시는 길 문의 : 031-216-7840</p>

2020. 3. 27.

## ■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)

- 검색대상 :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
- 주택의 범위
  -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,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(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)
  -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(이하 '분양권 등',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)
- 주택 및 분양권의 소유기준일
  - 주택의 소유 기준일(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,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)
    1. 건물등기부등본 : 등기접수일
    2. 건축물대장등본 : 처리일
    3.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: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
  - 분양권의 경우
    1.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
    2. (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)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
    3. (분양권 등의 상속·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)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
-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(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)
  - ※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(부동산) 가액에 포함됨
  -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
  -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(수도권은 제외)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(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)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
    - 가.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
    - 나. 85㎡ 이하인 단독주택
    - 다.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
  -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
  -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
  - ⑤ 20㎡ 이하의 주택(20㎡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)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(단,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)
  -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, 멸실,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
  -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    - \* 무허가건물이란? 2006.5.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㎡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
    - \* 무허가 소명방법 :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 -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\*단,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
  - ⑨ 매매 외 상속·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

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출처

항목		소득 항목 설명	자료 출처
근로 소득	상시근로 소득	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	- 건강보험 보수월액 -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(소득신고) - 장애인고용공단자료 (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/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: 근로소득) - 국세청종합소득(근로소득)
	일용근로 소득	-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- 건설공사종사자(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) - 하역(항만)작업 종사자(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)	-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- 고용노동부 고용·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
	자활근로 소득	자활근로, 자활공공근로, 자활공동체사업, 적응훈련,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	- 자활근로자 근로내역
	공공일자리 소득	노인일자리사업, 장애인일자리사업,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	- 노동부 '일모아' 근로내역
사업 소득	농업소득	경종업(耕種業), 과수·원예업, 양잠업, 종묘업, 특수작물 생산업, 가축의 사육업,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* 농업소득=국세청 종합소득+농업직불금	- 국세청 종합소득(사업소득) -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지원부 -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직불금
	임업소득	영림업·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	- 국세청 종합소득(사업소득)
	어업소득	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	- 국세청 종합소득(사업소득)
	기타사업소득	도매업·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	- 국세청 종합소득(사업소득) - 사업자등록증
재산 소득	임대소득	부동산·동산·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	- 국세청 종합소득
	이자소득	예금·주식·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	- 국세청 종합소득
	연금소득	민간 연금보험,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	- 국세청 종합소득 - 금융정보 조회결과
기타 소득	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·기타금품(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)	- 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국방부퇴직, 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,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, 보건처 보호대상자명예수당, 보호대상자보상급여 등 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호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간호수당,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	

# 확약서

## 1. 임대주택 및 계약자 표시

주택의 표시	지역		건물명		호	
계약자 성명				생년월일	년	월 일

## 2. 확약 내용

**제1조 (계약체결)** ① 본 확약서는 본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. ② 위 주택의 계약금은 일금 이십만원정(₩200,000)으로 하며, 계약자는 입주자격 검증 전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검증 완료 전까지 계약서 원본 미교부, 입주불가 등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. ③ 임대조건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, 위약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, 본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한다.

**제2조 (계약의 해제)** 향후 입주자격 심사 결과 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은 경기도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고,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며 계약금에 대한 이자 등은 지급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.

**제3조 (위약금) 계약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, 입주 전 해약, 입주자격 검증을 위한 보완서류 미제출, 연락수단(전화번호 및 주소) 변경시 미통보 등으로 인한 해약의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위약금( )원을 공사에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. (단, 위약금이 계약금(200,000원)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.)**

■ 위약금 = \*월간 총임대료(해약월 기준) × 24개월 × 5/100 (5%)

※ 월간 총임대료 = (임대보증금 × 이자율\*) / 12 + 1개월분 임대료

\* 이자율 : 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

**제4조 (입주시기)** 입주자격 검증 후 입주가 가능 시기는 공사가 별도 통보하며 입주가 가능 시기 통보 전에 계약자 임의로 입주 일정을 세움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차질, 금전적 손실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
위 사항에 모두 동의하며 본 확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.

2020 년 4 월 일

위 확약자 성명 : (인)

경기도공사 사장 귀하